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25. . .
발 의 자	김근한 의원 외 1인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근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5. . . .
발 의 자 : 김근한·김민성 의원(2인)
찬 성 자 : 강승수·김낙관·김재우·김춘남
소진혁·양진오·장미경 의원(7인)

1. 제안이유

「평생교육법」 개정 및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따라 평생학습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, 대학·기업·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나. 경비보조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다.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의2)
- 라.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마.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(당초) 운영할 수 있다 → (변경) 운영하여야 한다

3. 조례안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, 제16조, 제21조의3, 제40조의3

나. 부서검토: 평생학습원 의견제출(붙임)

다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라. 기 타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정규과정”을 “정규교육과정”으로, “성인문자해득교육, 직업능력향상교육”을 “성인 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평생교육진흥)”을 “(평생교육 진흥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평생교육기회”를 “평생교육의 기회”로, “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”을 “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지원활동”을 “지원 활동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평생교육기관·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대하여”를 “필요한 사업비를”로, “보조금을”을 “평생교육기관·대학·단체 및 학습동아리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비용의”를 “비용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중전의 제5호)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
 6.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구미시 지방

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의2(민간위탁)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업기술 및 전문 자격 취득 과정
2. 특수 교육 및 전문 교육과정
3.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
4.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업
5.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한 사업
6.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 중 “평생교육사업”을 “평생교육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운영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평생교육의 영역) 평생교육의 영역은 학교의 <u>정규과정을 제외</u>한 학력보완교육, <u>성인문자해득교육</u>, <u>직업능력향상교육</u>, <u>인문교양교육</u>, <u>문화예술교육</u>, <u>시민참여교육</u>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</p>	<p>제3조(평생교육의 영역) ----- ----- <u>정규교육과정</u> ----- <u>성인 문해교육</u>, <u>직업능력 향상교육</u>, <u>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평생교육진흥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모든 시민에게 <u>평생교육기회</u>가 부여될 수 있도록 연간 운영계획 및 <u>5년 마다 평생교육진흥정책</u>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<u>지원활동</u>을 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평생교육 진흥) ① ----- ----- ----- <u>평생교육의 기회</u>----- ----- <u>5년마다 평생교육 진흥 정책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원 활동</u>-----.</p>
<p>제5조(경비보조) ①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<u>평생교육기관·단체 및 학습동아리</u>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<u>보조금</u>을</p>	<p>제5조(경비보조) ① ----- ----- <u>필요한 사업비</u>를 ----- ----- <u>평생교육기</u></p>

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~ 3. (생략)
4.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시민의 평생교육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

<신설>

5.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<신설>

<신설>

관·대학·단체 및 학습동아리에 -----.

② 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-----
-
- 비용 ----

5. 대학의 지역사회 평생학습 진흥 및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

6.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, 방법 및 조건 등은 「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5조의2(민간위탁) ① 시장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평생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에 사업을 위탁,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직업기술 및 전문 자격 취득

제6조(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)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1조(회의소집 등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- 과정
2. 특수 교육 및 전문 교육과정
 3.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
 4. 마을 단위 평생학습 활성화에 관한 사업
 5. 사업추진을 위해 별도 운영 및 관리 인력이 필요한 사업
 6.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구미시 평생교육협의회) 평생교육 사업-----

 -----.

제11조(회의소집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협의회의 회의 소집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구미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7조(읍면동 평생학습센터) ①
시장은 읍·면·동별로 시민을
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
운영하고 상담 등을 제공하기
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
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②·③ (생략)

제17조(읍면동 평생학습센터) ①

----- 운영하여야 한다.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

□ 「평생교육법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평생교육”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, 성인 문해교육, 직업능력 향상교육,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, 인문교양교육, 문화예술교육,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.
2. ~ 5. (생략)
6. “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”(이하 “성인 진로교육”이라 한다)이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·탐색·준비·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·진로심리검사·진로상담·진로정보·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.

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1. ~ 2. (생략)
3.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(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포함한다)
4. ~ 5. (생략)
6. 그 밖에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

등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교육감 또는 지역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 ①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읍·면·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40조의3(성인 진로교육의 실시) 평생교육기관, 대학, 「진로교육법」 제15조에 따른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검 토 의 견 서

부서명: 평생학습원

조 례 명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검토 사항

- 근거 법령
 -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(정의)
 - 「평생교육법」 제16조(경비보조 및 지원)
 - 「평생교육법」 제21조의3(읍·면·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)
 - 「평생교육법」 제40조의3(성인 진로교육의 실시)

□ 주요 사항

- 평생교육의 영역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경비보조,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5조의2)
- 회의소집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관한 사항(안 제17조)
(당초) 운영할 수 있다 → (변경) 운영하여야 한다

□ 검토 결과

-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법적근거의 통일성을 높임
-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 정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
- 국가 평생학습진흥계획에 따른 지자체-대학 평생학습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근거가 될 것임

□ 조례 제(개)정에 따른 향후

- 기대효과: 민간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·연계하여 시민을 위한 전문 평생학습 제공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,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관련 개정으로 시민의 근거리 생활권 평생학습 기회 확대 발판을 마련
- 소요예산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문 제 점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안 제5조(경비보조):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
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향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: 총 38,260천원 (1억원 미만)
 - 평생학습원에서 추진하는 보조금 지원사업 (2025년 기준)
 -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(4개 기관): 10,260천원
 -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: 14,000천원
 -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: 14,000천원

4. 작성자

- 평생학습원 학습진흥팀 김재현(☎054-480-4333)